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 2021.06.01

개정 : 2021.09.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3.10.16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25 조제 5 항에 의거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된다.

제 3 조(교육목적) 보건의료행정과(이하 “학과”라 한다.) 프로그램은 대학의 사명, 교육 목표, 인재상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요구되는 시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 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 4 조(프로그램의 책임자) ①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책임자를 둔다.

② 프로그램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의전담교원, 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 등의 일부 직무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③ 프로그램책임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인증과정의 총괄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의 절차에 참여
4. 그 밖에 프로그램 인증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프로그램의 소속) 2021 학년도 1 학기 보건의료행정과로 신입학한 학생부터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한다.

제 6 조(프로그램의 전입) ① 프로그램의 소속이 아닌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전과생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신청서(별지 1)와 직전 대학 또는 계열·학과의 성적 증명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학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입을 희망학생이 제출한 제 2 항의 신청서등 기초로 대체 교과목 인정 여부 및 전입 허가 여부를 판정하며,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 제 3 장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 7 조(프로그램의 운영체제) ① 학과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현장실습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행정과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 8 조(프로그램 운영지원 조직) ① 교육과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 9 조(프로그램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학과 프로그램 중장기발전계획은 산업체, 졸업생, 교수, 재학생 등의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한다. 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롭게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과 프로그램 중장기발전계획의 수행 및 평가를 위해 매년 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된 결과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 10 조(프로그램 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학과 프로그램 단기발전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수립된 연도별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다.

② 학과 프로그램 단기발전계획의 평가는 대학의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

제 11 조(프로그램의 교육목표)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업체, 졸업생, 교수, 재학생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 및 개선한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HIM)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조사 및 분석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는 5년 주기로 필요시에 따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검토하고 개

선한다.

④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제 12 조(프로그램의 편성) ① 프로그램은 정평원의 교육과정 이수체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1. 프로그램의 최종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목은 프로그램의 최종성과와 연계

2.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이하 ‘필수이수 교과목’ 라 한다.)과 보건의료정보관리 특성화 이수 교과목(이하 ‘선택이수 교과목’ 라 한다.)을 50 학점 이상 편성

3. [별표 1]의 필수이수 교과목을 40 학점 이상 편성

4. [별표 2]의 선택이수 교과목을 10 학점 이상 편성

제 13 조(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①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선-후 이수체계(별표 3)를 따라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학과 홈페이지, 학과 게시판, 학과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공지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필수이수 교과목 중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후수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선수교과목이 여러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최소 1 학기 이상은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하는 자는 후수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인정) ①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가 불가능한 학생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책임자의 지도면담 또는 구술 테스트를 통해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재입학 또는 복학생의 입학 당시 교육과정상 부득이하게 선후수교과목의 체계 준수가 어려운 경우

2. 편입학생이 전적대학 선수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기타 프로그램책임자 및 지도교수가 이수체계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하는 학생

② 제 1 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수체계 인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프로그램의 학습성과) ①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매학기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성취도를 평가
  2.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개정 2021.12.01>
  3.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해 운영된 교과목의 수준, 방법, 범위, 평가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
  4.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지속적 질 개선(CQI)을 위해 매학기 정기적으로 성취도를 분석하여 수업개선과 프로그램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 ②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자에 대해서는 학생 개별 상담 및 추가 학습 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자 관리) 평가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자 명단을 의결하고 학생의 확인을 거쳐 해당부서에 명단을 제출한다.

제 17 조(프로그램의 이수신청) ①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학과의 학생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선택 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 1)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리한다.

제 18 조(프로그램의 최종성과) ① 학과의 프로그램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정평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연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최종성과(별표 4)를 설정한다.

- ② 프로그램의 최종성과는 학과의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프로그램이수가이드, 홍보자료, 신입생 OT 자료에 공개할 수 있다.

제 19 조(프로그램의 이수포기) ① 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프로그램의 이수포기로 간주한다.

-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이수를 포기할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별지 2)를 프로그램의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프로그램 이수포기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한다.

제 20 조(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요건) 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칙 제 34 조제 6 항에 의거한다.

- ② 프로그램 이수자는 필수이수 교과목 40 학점 이상과 선택이수 교과목 10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 1 항과 제 2 항의 요건을 갖춘 재학생은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부여하고 학위 명칭에 “보건전문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으로 표기한다.
- ④ 프로그램 이수포기자 또는 미이수자가 학적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위명칭은 “보건전문학사” 로 표기한다.

## 제 4 장 현장실습교육

제 21 조(현장실습 절차)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운영 및 관리체계도(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 22 조(현장실습교육 책임자) 현장실습교육의 책임자는 학과장(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제 23 조(현장실습의 협약) ① 현장실습을 실행하기 위한 산업체와의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체결한다.  
 ② 현장실습 기관이 소규모이거나 산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서를 승인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4 조(현장실습기관의 선정)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및 규모가 현장실습 목표달성에 가능한 산업체로 선정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교육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 중 상시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산업체  
 2. 법령에 의거 설립된 산업체로 학과의 전공교과목과 연관된 산업체  
 3. 그 밖에 전공분야의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또는 기관  
 ③ 학과는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체의 업종 및 업무내용과 전공분야와의 연관성  
 2. 현장실습기관의 실습 프로그램 및 실습 활용 시설과 장비  
 3.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4. 산업체 또는 기관의 소재지 및 기숙사의 제공 가능 여부  
 5. 산업체 또는 기관의 실습학생의 권리보호 및 지도지침 등의 구비여부

제 25 조(현장실습기간)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3주(1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현장실습대체)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학습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1. 국가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2. 학생 질병 및 기타사고

② 현장실습대체와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현장실습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 27 조(현장실습 사전조치) ①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지침서를 실습생에게 배포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기술서 내용
2. 현장실습기간 중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
3.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태도에 관한 내용
4. 현장실습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
5.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내용
7.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
8. 그 밖에 현장실습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제 1 항의 현장실습 지침서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8 조(현장실습 사후조치) ① 현장실습 종료 후 학과에서는 실습결과 보고회 및 실습 책임자 강평 등과 같은 사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및 실습기관의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지침서를 수정하고 차년도의 현장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

제 29 조(현장실습 배정) ① 학과 현장실습 기관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실습희망 기관을 서면조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의 배정은 실습생의 주거지, 실습기관의 규모 및 위치, 실습희망기관 등을 종합하여 학과장이 배정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실습희망 기관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30 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현장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과의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을 지도할 의무를 진다.

② 학과장은 실습기관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기관의 지도학생이 겹치는 경우 지도교수의 희망지를 우선 배정하되 학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④ 실습기관별 지도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실습생 안전에 관한 사항
  - 2. 현장실습기관의 교육 담당자에 관한 사항
  - 3.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여부 및 직장예절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현장실습교육의 충실성 등에 관한 사항
- ⑤ 순회지도교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와 실습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실습 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실습생의 준수사항)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두발, 복장, 출퇴근 시간 등의 직장예절
-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
- 3. 현장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
- 4. 실습일지의 작성

제 32 조(실습생의 제출서류) ① 현장실습 종료 시 현장실습관련서류를 실습기관의 장 또는 실습담당자에게 서명확인 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장실습일지
  - 2. 현장실습완료인증서
  - 3. 현장실습교육평가서
  - 4. 만족도 설문조사
  - 5.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③ 현장실습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실습교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과제물 평가, 현장책임자 평가, 순회 지도 평가를 80%로 하고, 출석평가를 20%로 나누어 실시한다.

## 제 5 장 학생지도

제 34 조(학생지도) ① 학생지도는 본 대학의 학칙 제 40 조에 의거하며, 학과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신입생 및 신규프로그램 전입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계획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공지한다.

-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교수가 교과목 이수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과 학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지침에 따른다.

제 35 조(학생상담) ① 학과 지도교수는 교과목 이수 지도 외에 학생 개별 학습, 진로, 대학 생활적응에 대하여 매학기 최소 정기상담 2 회와 수시상담을 실시한다.

- ② 학생 상담은 학생통합관리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보건의료행정과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3월 보건의료행정과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교과목	비고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2.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실습
3. 보건의료조직 관리	
4. 건강정보보호	
5.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실습
6.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실습
7.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실습
8. 암 등록	실습
9. 의료의 질 관리	
10.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실습
11. 보건의료 통계	실습
12.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실습
13. 의료정보기술	
14. 의료관계법규	
15. 의학용어	
16. 병리학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	실습

[별표 2] 보건의료정보관리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 보건의료정보관리 선택이수 교과목

교과목	보건의료정보관리 특성화 학습 영역
보건의료정보관리 (H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정보관리 심화 (질병분류, 의무기록정보 질향상 심화 등)</li> <li>- 전사, 표준, 정보보안, 의료 질 관지,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산재 및 자동차보험 등), 포괄수가제(DRG), 신포괄수가제 등</li> <li>- 임상기초(약리학, 영상의학 등)</li> <li>- 기타 HIM 영역의 교과목</li> </ul>
보건의료정보학 및 서비스관리 (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통계</li> <li>-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심화</li> <li>- 데이터마이닝, 데이터웨어하우스,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li> <li>- 조사(연구)방법론</li> <li>- 기타 HI 영역의 교과목</li> </ul>
보건의료정보기술 (H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전산, 병원의료전산실무</li> <li>-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 실무, U-Healthcare</li> <li>- 컴퓨터 프로그래밍</li> <li>- 기타 HICT 영역의 교과목</li> </ul>
보건의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건, 보건의료정책, 보건학 개론, 국제보건개발</li> <li>- 병원경영학, 병원재무관리, 병원회계, 원무관리</li> <li>- 보건행정,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 보건의료산업론, 병원기획론</li> <li>- 보건교육학, 보건사업관리</li> <li>- 병원서비스, 병원코디네이터</li> <li>- 기타 보건의료관리 영역의 교과목</li> </ul>

[별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선-후 이수체계

##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선-후 이수체계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
<b>의학용어<sup>1)</sup></b> <b>병리학<sup>1)</sup></b> <b>해부생리학<sup>1)</sup></b>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2.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3.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4. 암 등록 5.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b>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sup>2)</sup></b>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b>보건의료정보관리학<sup>3)</sup></b>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p><sup>1)</sup> '의학용어, 병리학, 해부생리학' 교과목은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 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암 등록,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의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 (의학용어, 병리학, 해부생리학 교과목을 다 학기에 걸쳐 편성한 경우에는 최소 1학기 이상은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p> <p><sup>2)</sup>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는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의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를 다학기에 걸쳐 편성한 경우에는 최소 1학기 이상은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p> <p><sup>3)</sup> '보건의료정보관리학'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의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보건의료정보관리학을 다학기에 걸쳐 편성한 경우에는 최소 1학기 이상은 선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함).</p>	

[별표 4]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최종성과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최종성과

구분	프로그램 최종성과 내용
P01	보건의료정보관리 기초 지식 <sup>1)</sup> 및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에 적용한다.
P02	데이터품질관리(DQM)를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코드를 적용한다.
P03	보건의료 데이터 및 정보를 다양한 정보 이용 목적 <sup>2)</sup> 에 맞춰 변환 및 분석한다.
P04	보건의료정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sup>3)</sup> 를 이해하고 관련 요소의 변화를 조직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 관리한다.
P05	양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표준과 관련 정보기술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P06	보건의료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P07	조직 및 팀 내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P08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임무와 윤리, 사회적 책임을 이해한다.
P09	보건의료정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P010	보건의료 및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진료 개발 및 자기개발에 참여한다.
<p><sup>1)</sup> P01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기초 지식 : 기초 및 임상의학지식, 의학용어, 보건의료정보관리 개념, 원칙 등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을 의미함</p> <p><sup>2)</sup> P03의 다양한 정보 이용 목적 : 경영, 통계, 연구, 보건의료정책 관련 질병 및 환자 조사, 건강보험청구, 평가 관련 지표 생성 등을 의미함</p> <p><sup>3)</sup> P04의 보건의료정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보건의료 관련 법률 및 정책, 의료기관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의 질 평가, 영양급여 기준,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진료정보 교류, 전자 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타 보건의료 관련 정보기술 등을 의미함</p>	

[별표 5] 현장실습운영 및 관리 체계도 <개정 2023.10.16.>

